

社團法人 韓國生物科學協會 定款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는 社團法人 韓國生物科學協會라 稱한다

第二條 (1) 本會는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典農洞 山 八의三에 둔다

(2) 本會에 屬하는 各學會는 서울特別市와 道에 들 수 있다

第三條 本會는 生物科學과 關係있는 各學會와의 紐帶를 鞏固히 함으로써 韓國生物科學의 綜合的인 研究와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四條 本會는 第二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下記의 事業을 한다

- 1. 生物科學의 綜合的 研究에 關한 書籍의 出版
- 2. 生物科學의 分科別 研究에 關한 啓蒙誌 發刊
- 3. 學術研究發表와 講演會 및 展示會의 開催
- 4. 其他 理事會에서 決議된 事項

第五條 本會는 動物學會, 植物學會, 微生物學會 등으로써 組織한다

第二章 會 員

第六條 本會의 會員은 下와 같다

1. 正會員

生物科學에 屬하는 學問을 國內外 大學 또는 大學院에서 專攻하였거나 政府機關에서 四年以上 그 分野의 職務에 從事한 實績이 있는者

2. 準會員

生物科學에 屬하는 學問을 研究中에 있거나 研究하고자 하는者 또는 그 分野의 職務에 從事하고 있거나 從事한 實績이 있는者

3. 名譽會員

本會의 研究活動을 贊助하는 國內外人 또는 團體로서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者

第七條 本會會員이 되코자 하는 者는 所定書式의 入會節次를 해야한다

第八條 本會會員은 脫退 및 除名에 依하여 그

資格을 喪失한다

但 除名處分은 會員으로서 義務를 履行하지 않거나 本會의 名譽를 毀損한者에 對하여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行한다

第九條 本會의 正會員은 議決權 또는 任員의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지고 準會員은 本會의 研究活動에 積極 參與할 수 있으며 本會 會則을 遵守해야 한다

第三章 任員 및 職務

第十條 (1) 本會의 任員은 下와 같다

- 1. 會 長 1名
- 2. 副會長 3名
- 3. 理 事 9名
- 4. 監 事 2名

(2) 本會에 名譽會長 一人과 顧問 若干名을 들 수 있으며 理事會의 推薦으로 會長이 推戴한다

第十一條 本會任員의 職務는 下와 같다

- 1. 顧問 및 名譽會長은 本會의 研究活動을 支援協力한다
- 2.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理한다
-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 4.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며 맡은바 任務를 遂行한다
- 5. 監事는 本會의 會計事務를 每年 一回以上 監事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으며 表決權은 없다

第十二條 (1) 選出한 任員은 文敎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就任한다

(2) 任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3) 補選任員은 前任者의 殘任期間 在任한다

第四章 會議 및 機關

第十三條 本會에 下의 會議을 두고 會長이 이를 召集하며 會長은 議長이 된다

- 1. 總 會
- 2. 理事會

第十四條 (1)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 (2) 定期總會는 每年 十一月中旬에 召集한다
 (3)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와 理事會 또는 會員定數 五分之一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召集한다

第十五條 總會는 本會의 最高決議機關이며 그 權限은 下와 같다

1. 定款의 變更
2. 會長 副會長의 認准과 理事의 選任
3. 豫算 및 決算의 承認
4. 本會 解散에 關한 事項
5. 其他 重要事項의 決定

第十六條 (1) 理事會는 會長 및 副會長과 選任 理事로서 組織한다

- (2)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理事過半數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召集한다

第十七條 理事會의 權限은 下와 같다

1. 規定의 制定 改廢 및 機構의 設定
2. 總會에 附議할 案件의 審議決定
3. 會長, 副會長의 選出 但 理事中에서 互選한다
4. 會長이 指名한 監事의 認准
5. 豫算 및 決算의 審議
6. 研究發表의 審査決定
7. 執行部 要請에 關한 決定
8. 會費 其他 負擔金의 決定
9.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
10. 其他重要事項의 審議決定

第十八條 會長의 權限은 下와 같다

1. 總會 및 理事會에서 決定된 事項의 執行
2. 總會에 提出할 案件의 作成
3. 其他 本會運營에 關한 指導 監督

第十九條 (1) 總會는 在籍會員 五十名 以上으로써 成立하고 出席會員 過半數 以上으로써 議決한다 但 定款變更는 別途規定에 依한다

- (2) 理事會는 在籍理事 三分之二 以上 出席으로써 成立하고 出席理事 三分之二 以上으로써 議決한다

第五章 財政

第二十條 本會의 經費는 下의 收入金으로써 充當한다

1. 會費 徵收金
2. 事業 收益金
3. 雜收入金

第二十一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十一月一日에 始作하여 翌年 十月末日에 終了한다

第二十二條 會長은 每年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收支決算書, 事業報告書 및 當該年度의 事業計劃書, 收支豫算書等을 作成하여 理事會 또는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六章 附則

第二十三條 本定款은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法院에 登記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二十四條 本定款은 總會員 三分之二 以上の 贊同으로써 改定한다 但 文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二十五條 本會가 社團法人으로 設立됨에 따라 從來의 韓國生物科學協會는 發展의 으로 解體되고 그 會員은 本會會員이 되며 一切의 事務를 引受한다

第二十六條 本定款施行에 必要한 規定은 理事會에서 定할 수 있다

第二十七條 (1) 本會를 解散할 때에는 會員의 三分之二 以上の 同意를 얻어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2) 本會를 解散할 때의 本會의 財産은 總會의 決議에 따라 國家 또는 本法人과 同一한 또는 類似한 目的을 갖인 法人體에 寄附하되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二十八條 本定款에 規定이 없는 것은 通常慣例에 依한다

社團法人 韓國生物科學協會 動物分科學會 準則

(1964年 10月 31日 第八回 大會에서 採擇)

第一條 本會는 韓國動物學會(The Zoological Society of Korea)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는 本部를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三條 本會는 動物學에 關한 研究를 獎勵하고 그 知識의 普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四條 本會의 會員은 下와 같다

1. 正會員—動物學에 屬하는 學問을 國內外 大學 또는 大學院에서 專攻하였거나 其他 研究機關에서 四年以上 그 分野의 職務에 從事한 實績이 있는 者
2. 準會員—動物學에 屬하는 學問을 研究中에 있거나 研究코자 하는 者 또는 그 分野의 職務에 從事하고 있거나 從事한 實績이 있는 者
3. 名譽會員—本會의 研究活動을 贊助하는 國內外人 또는 團體로서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者
4. 特別會員

第五條 本會에 入會코자 하는者는 定款 第七條의 節次에 따라서 正會員 二名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

第六條 本會는 會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任員으로서 會長 一名, 副會長 二名, 理事 若干名, 監事 二名, 幹事 三名을 둔다 任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但 會長에 限하여 再選될 수 없다

第七條 本會의 運營은 會長, 副會長, 理事로 構成한 理事會의 決議에 依한다 會長은 本會務를 統轄하고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其職務를 代行한다

第八條 本會는 每年 一回 大會를 연다 大會는 總會와 研究發表會로 나누고 總會에서는 會務의 報告 會期の 改定 任員改選 其他 議事를 行한다

但 會長, 副會長은 前年度 理事會에서 推薦하여 總會의 同意를 얻는다 同意는 在席正會員의 過半數로서 成立된다 其他 任員의 選任은 會長, 副會長에 一任한다

第九條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入會金, 會費, 其他의 收入으로서 이에 充當한다
正會員 入會金 2,000원 年會費 3,000원
準會員 入會金 100원 年會費 100원

第十條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下의 事業을 行한다

1. 會誌發刊 및 動物學 關係書籍의 發刊
2. 學術講演, 討議, 質疑 및 研究發表會
3. 其他 理事會에서 議決된 事項

第十一條 本會 會計年度는 十一月一日부터 翌年 十月末日까지로 한다

第十二條 本會에 編輯委員會를 둘 수 있다 但 編輯委員은 會長이 此를 委囑하되 理事會의 同意를 要한다

第十三條 本會는 地方에 支部를 둘 수 있다 但 會員 二十名의 連署로 申請하여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十四條 會則以外的 件은 通常慣例에 依한다
附 則

第十五條 本會의 會則은 通過日로부터 施行하며 從來의 韓國 動物學會 會員은 本會則에 따라 會員이 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十六條 現任員은 本會則에 依하여 選任된 것으로 看做하며 그 任期는 1965年 11月 總會까지로 한다

韓國動物學會 慶北支部 會則

第一條 本會는 韓國動物學會 慶北支部라 稱한다

第二條 本 支部의 事務室은 大邱市內에 둔다

第三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 및 準會員(大學生으로 한다)으로 構成한다

本 支部會員은 自動的으로 韓國動物學會 會員이 된다

第四條 本 支部의 會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다음 任員을 둔다

支部長 1名, 理事 若干名, 幹事 1名, 監事

1名

第五條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重任할 수 있다

第六條 支部長은 前年度 理事會에서 推薦하여 支部總會의 同意를 얻는다

理事, 幹事는 支部長이 選任하고 監事는 理事會에서 選出하여 總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第七條 本 支部의 運營은 支部長 및 理事로서

構成되는 支部理事會의 議決에 依한다

第八條 支部 理事會에서는 1名의 代表理事를 選出한다

第九條 支部長은 本 支部의 會務를 總括하고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代表理事는 支部長 有故時에 此를 代理한다

第十條 支部運營에 所要되는 經費는 支部會員이 據出하는 韓國動物學會 年會費의 一部 (40%) 및 其他 收入으로 充當한다

第十一條 本 支部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事業을 行한다

總會 每年 10月中에 行한다

月例會 : 偶數月

學術講演 : 研究發表

其 他 : 支部 理事會에서 決定된 事項

第十二條 本 支部會則 以外の 件은 韓國動物學會 會則 및 同 支部設置規定에 依한다